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23
----------	-----

제출년월일 : 2020. 12.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0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4차 계획은
 건물 취득 1건 1동 13,213.27㎡ 5,800,000천원
 - 평창돔(사유재산) 기부채납 취득 : 1동 13,213.27㎡ 5,800,000천원

3. 붙임자료

- 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1부
- 나. 2020년 제4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 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부서별) 1부
- 라. 관계법령 발췌 1부

[붙임 나]

2020년도 제4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 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건물취득 합계 (1건 1동)			13,213.27	5,800,000			
소계 (1건 1동)			13,213.27	5,800,000			
1	대	대관령면 수하리 142-3	13,213.27	5,800,000	2020 하반기	기부채납	(주)에이치 제이매그 놀리아 용평호텔 앤리조트

※ 평창돔 기부채납

[붙임 다]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부서	쪽
1. 평창동(사유재산) 기부채납 취득	교육체육과	6

평창돔(사유재산) 기부채납 취득

- 가장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평가받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시발점이 된 「1999 강원동계아시안게임」의 주 무대였던 『평창돔 경기장』은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나 노후화되어 개선 필요
- 평창 특색에 맞는 대규모 문화행사 및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기부채납 받아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2021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2024 강원유스올림픽, 동계아시안게임(남북공동개최) 유치

□ 개요

- 기 부 자 : (주)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대관령면 용산리 130)
- 기부물건 : 평창돔 건물 1동(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3,213㎡)

구 분	구 조	용 도	위 치	시가표준액	비 고
건 물	철근콘크리트조	운동시설 (실내빙상경기장)	대관령면 수하리 142-3	58억원	

※ 평창돔 건물만 기부채납하며 건물 부지와 주변부지는 무상임대

- 추진배경
 - 메가이벤트 개최를 위한 본 시설의 노후로 개·보수 필요
 - ⇒ 용평리조트로부터 기부채납 의사 타진

□ 추진사항

- 기부채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2020. 7월
-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의 : 2020. 9. 14.(의회부결)
- 기부채납 업무협약(MOU) 변경 체결(1차) : 2020. 11월
-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 2020. 12. 21.(의회부결)
- 의회 심사의견에 대한 사측 내부 공론화 및 결과 회신 요청 : 2020. 12. 21.

○ 사측 의견 회신(용평리조트) : 2020. 12. 23.

- 위탁시 위탁운영비 2억원 범위내 지급, 세부사항 추후 협의방안 제시

□ 검토사항(필요성)

- 올림픽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나 동계 스포츠의 경우 메인 행사(개회식 및 폐회식)를 위해선 돔 시설이 필요한데 관내에는 평창돔이 유일한 상황 ⇒ 시설의 노후로 리모델링 필요
- 기업의 성과와 이윤면에서 본 시설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은 담보 상태 ⇒ 민간 자산에 대한 정부(지자체) 예산 지원은 불가한 상황
- 성공개최한 올림픽 주 개최지로서의 지역주민 자긍심과 위상제고, 평화 올림픽 정신 계승 등 본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사용의 필요성 대두
- 관리와 사용 주체가 굳이 되어 적기에 체육, 문화, 전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창돔을 기부채납 받고자 함
- 향후 평창국가대표 선수촌과 연계한 다목적 훈련장소 활용 및 타국의 동계스포츠 훈련장 유치, 올림픽 유산시설과 연계한 관광·마이스 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취득(기부채납)대상 재산내역

○ 건물(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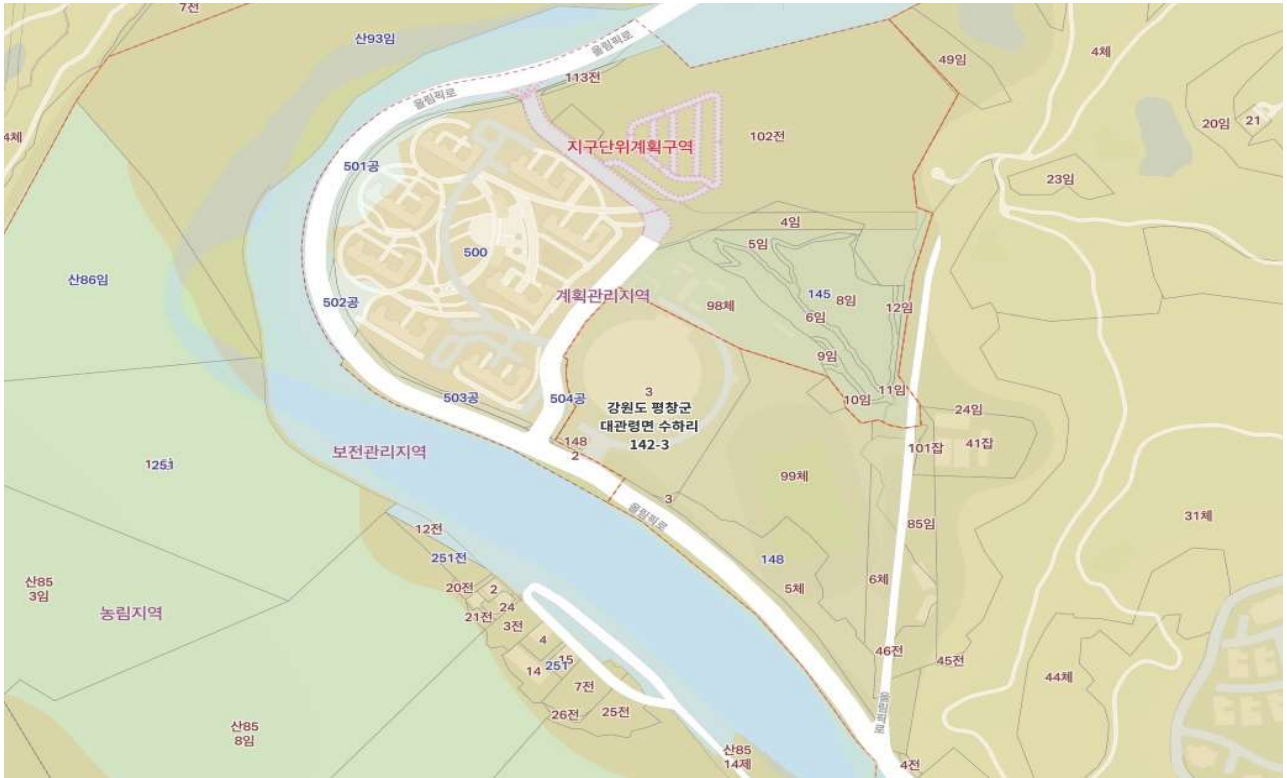
(단위 : m², 억원)

소재지	번지	층별	용도 (구조)	연면적	시 가 표준액	취득 시기	소유자
계				13,213.27			
대관령면 수하리	142- 3	지하1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1,853.14	58	2020년 (하반기)	(주)에이치제이 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 조트
		1층	경기장, 사무실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6,520.31			
		2층	관람석, 화장실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2,314.35			
		3층	관람석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2,450.44			
		지하1	가스저장고 (철근콘크리트조)	47.15			
		1층	기화기실 (철근콘크리트조)	2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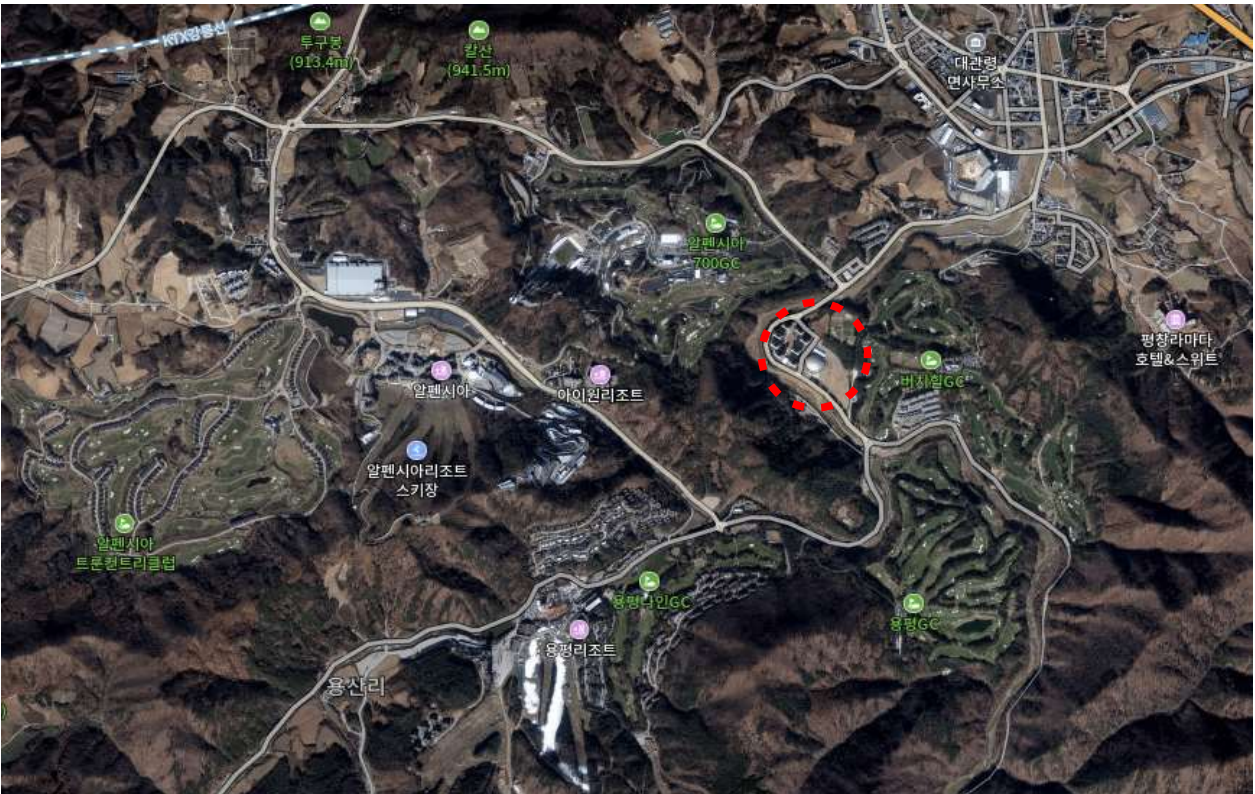
□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20. 12월
- 소유권 이전 등기축탁 : 2021. 1월
-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 등 확보 : 2021. 3월
- 시설개보수 설계용역 및 사업 추진 : 2021. 6월
- 개보수사업 완료 및 시설활용 : 2021. 12월~

□ 지적도



□ 위치도



□ 전경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